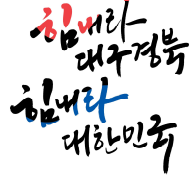
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
		배포일시	2020. 4. 6.(월) / 총 3매(본문2)	
담당 부서	기술정책과	담당자	• 과장 장순재, 사무관 성언수, 주무관 김연규 • ☎ (044) 201-4997	
보도일시		2020년 4월 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 6.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민 - 관, 열수송관·통신구 등 기반시설 안전 강화 ‘맞손’

기반시설 관리주체에 민간관리자민자사업자 포함·생활안전 환경 조성 총력

-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반시설인 열수송관, 통신구 등에 대해 관리주체인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가 유지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.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「기반시설관리법」 시행(‘20.1.1)에 이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「기반시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」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 - 이번 법률 개정은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(‘18.11),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(‘18.12) 등 노후화된 기반시설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정부가 발표한 「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(‘19.6.18)」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.
- * (대상 기반시설 15종) 도로, 철도, 항만, 공항, 하천시설, 댐, 저수지 등 SOC 7종
수도, 하수도, 전기, 가스, 난방, 통신, 송유,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
- 특히, 종합대책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과 책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고, 통신구·송유관·가스관 등 민간이 관리하는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강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.

□ 이번 개정 법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민간관리자 및 민자사업자도 기반시설 관리주체로 규정

- 공공성이 강한 민간 기반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 관리자와 민자사업자*를 관리주체에 포함하며,

* 민간관리자 : 열수송관 등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기관
민자사업자 :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에 따른 사업시행자

- 민간주체의 관리감독기관(중앙부처 또는 시·도)을 지정하여, 민간 관리시설에 대해서도 공공과 같이 관리감독기관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,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현재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이다.

② 민간관리자에 대한 용자지원 및 성능개선충당금 적립 구체화

- 국가 및 지자체는 열수송관, 통신구 등 민간관리자 소관시설의 실질적 유지관리를 위해 용자 형식의 비용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.
- 또한,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는 소관 기반시설의 성능개선을 위해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자체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.

□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장순재 과장은 “이번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민간관리주체와 협력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 성언수 사무관(☎ 044-201-4997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시설	국가	지자체	공공기관	민간
중대형 SOC	도로 (국토부)	고속국도(소유) 일반국도(소유·관리) *국토부 11,719km	지방도 이하 (소유·관리) *지자체 85,979km	고속국도(관리) *한국도로공사 3,991km	민자도로(관리) *48개 법인 776km
	철도 (국토부)	일반·고속철도(소유)	도시철도(소유)	일반·고속·도시철도 (관리) *철도공사, 철도공단, 6개 지방공기업 1,458km	민자철도(관리) *18개 법인 268km
	공항 (국토부)	공항(소유·관리)		공항(관리) *한국공항공사, 인천국제공항공사	
	항만 (해수부)	항만·어항(소유·관리)	항만·어항(관리) *7개 지자체	항만*·어항**(관리) *4개 항만공사 **한국어촌어항공단	
	댐 (환경부)	댐(소유)		댐(관리) *수자원공사	
	발전댐 (산업부)			댐(소유·관리) *한국수력원자력	
	저수지 (농식품부)	저수지(소유)	시·군 저수지 (소유·관리) *지자체 13,883개소	저수지 (일부 소유·관리) *농어촌공사 3,406개소	
	하천 (국토부)	국가하천(소유·관리) *국토부 3,010km	국가하천(위탁관리) 지방하천(소유·관리) *지자체 26,773km	보 구간(16개) (위탁관리) *수자원공사	
지하 시설물	상수도 (환경부)	광역상수도(소유)	지방상수도 203,701km (소유·관리) 지방상수 취·정수시설 445개소	광역상수도(관리) *한국수자원공사 5,379km 광역상수 취·정수·가압시설 157개소 배수시설 2,180개소	
	하수도 (환경부)		하수관로 149,030km (소유·관리) 하수처리장 648개소 (500m³ 이상)		민자사업 *하수관로 104건 8,835km, 하수처리장 46개소
	가스관 (산업부)			가스관(고압 배관) (소유·관리) *한국가스공사 4,854km	가스관(고압 배관) (소유·관리) *5개 도시가스사 33km
	송전선로 (산업부)			전력구(소유·관리) *한국전력공사	
	송유관 (산업부)	공군(소유·관리) 39km 국방부(미군) 78km *송유관공사 위탁		석유공사(소유·관리) 26km	대한송유관공사 (소유·관리) 1,104km SK에너지(소유·관리) 102km
	열수송관 (산업부)		서울(서울에너지공사, 208km), 부산(37km)	한국지역난방공사 (소유·관리) 2,240km	GS파워 등 32개사(소유·관리) 1,793km
	통신구 (과기정통부)				KT(소유·관리)
	공동구 (국토· 행안부)	국토부 9개소 (서울·대전·세종), 행안부 21개소 (9개 광역 지자체)	12개 지자체 (소유·관리) *시설관리공단, 민간기업 위탁 등 포함		